

# 인권헌장

|         |             |
|---------|-------------|
| 최종 수정일  | 2025.06.19  |
| 문서 관리부서 | 총무 담당 팀(부서) |

## 제 1 장 개 요

### 가. 제정목적

동원금속은 전 계열회사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동원금속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나.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동원금속과 계열사의 국내·외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이다.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동원금속의 각 계열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원금속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동원금속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하기 위한 인권실사 정책을 수립한다. 동원금속의 인권경영 관련부서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권실사)를 이행하며, 인권경영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 제 2 장 동원금속 인권경영 원칙

### 제 1 조 (인권존중)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성희롱, 학대, 체벌, 욕설 등 비 인격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 제 2 조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의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지역, 장애, 종교, 정치성향, 가족관계,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승진, 교육, 복리후생 등 일체 차별을 금지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제 3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여권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제 4 조 (노동법규 준수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한다. 또한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 제 5 조 (보건 및 안전)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가 요구하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 또한 임직원이 안전하고 청결한 근로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제 6 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동원금속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도 본 선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을 적극 지원

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상생을 추구한다.

## 제 7 조 (이해관계자의 정보보호)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이해관계자의 생명, 건강, 안전 등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제 8 조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한다.

## 제 9 조 (지역사회 및 토착민에 대한 인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경영 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새로운 토지를 구매하기 전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토착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 존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 소유권 확인 시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모든사업 영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토착민과 협의를 통해 참여를 보장한다.

## 제 10 조 (생활임금 보장)

동원금속은 모든 임직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그리고 현지 법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생활임금(living wage) 이상의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천하며, 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는 물론 교육, 건강, 주거, 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동원금속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된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신고채널

접수부서: 총무팀

이메일 : [dwhr@dwmic.com](mailto:dwhr@dwmic.com)

동원금속은 인권 존중을 적극 실천하고 인권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동원금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승 룡

**[개정이력]**

| 차수 | 제(개)정일     | 시행일        | 주요 개정내용 | 작성자         |
|----|------------|------------|---------|-------------|
| 0  | 2023-12-01 | 2023-12-01 | 초도제정    | 총무 담당 팀(부서) |
| 1  | 2024-12-13 | 2024-12-13 | 제 9조    | 총무 담당 팀(부서) |
| 2  | 2025-06-19 | 2025-06-19 | 제 10조   | 총무 담당 팀(부서) |